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52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 안도걸 · 조계원 · 박지원

주철현 · 조인철 · 이개호

김문수 · 허성무 · 문진석

문금주 • 정진욱 • 서삼석

전진숙 · 문대림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 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사업장이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 우에 한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금액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은 6%로, 기타 자산은 3%로 상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 7%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8)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사업장이 제30조의 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6)
-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사업장이 제30조의 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 제30조의3제5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 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 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 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서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__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 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12(사업장이 제 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 우에는 100분의 18)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서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u>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u> <u>하는 중견기업의 경</u> 우: 100분의 6

<u>라)</u>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3

- 2) (생략)
- 3) 1) 및 2) 외의 자산에투자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중소기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로서최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 라)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3 (사업장이 제30조의3 제5항에 따른 위기지 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6)
- 2) (현행과 같음)
-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10(사업장이 제 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 우에는 100분의 12)
- 나)중소기업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1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 100분의 5(사업장 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 는 경우에는 100분의 7)

라) 가)부터 다)까지 외 의 경우: 100분의 1 (사업장이 제30조의3 제5항에 따른 위기지 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

나.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 2. (생 략)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u>제10조제1항</u>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
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